정보공개 규정

<최종개정일 2020.5.27.>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, 동법 시행령(이하 "시행령"이라 한다) 및 동법 시행 규칙(이하 "시행규칙"이라 한다), 국토교통부정보공개규정(이하 "훈령"이라 한다)에 따라 한국철도공사(이하 "공사"라 한다) 정보공개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정보"란 본사 및 소속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(전자문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·도면·사진·필름·테이프·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.
- 2. "공개"란 본사 및 소속기관이 이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「전자정부법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(이하 "정보통신망"이라 한다)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.
- 3. "주관부서"란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.
- 4. "처리부서"란 해당 정보공개 업무를 취급하는 본사 각 본부·실·

단의 단위부서 및 산하 소속기관을 말한다.

- 제3조(적용범위) ① 이 규정은 본사 및 소속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.
 - ② 정보공개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 및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 외에는 이 규정을 따른다.
- 제4조(담당자의 의무 등) ① 각 소속별 담당자는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모든 문서는 제8조제6호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.
 - ② 정보공개 시스템관리자(IT운영센터장)는 고객의 정보를 3년마다 삭제하여야 한다.
- 제5조(정보공개책임관) ① 공사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의 총괄·조정을 담당하는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인재경영실장을 지정하고 정보공개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- 1. 정보공개심의회 운영
 - 2. 소속 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사무의 지도·지원
 - 3. 정보공개 담당 직원의 정보공개 사무처리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· 훈련
 - 4.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
 - ② 정보공개책임관을 보좌하고 정보공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재경영실 총무처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.
 - ③ 정보공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- 1.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접수, 분류, 이첩 등에 관한 사항
- 2.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등 운영에 관한 사항
- 3. 그 밖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
- 4. 정보공개책임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④ 각 소속기관의 정보공개책임관은 각 소속기관장으로 하고 정보 공개담당관은 각 소속기관장이 정한다.
- 제6조(자발적 사전공개대상 정보) ① 자발적 사전공개의 대상은 법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.
 - 1. 식품·위생, 환경, 복지, 개발사업 등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 보호와 관련된 정보
 - 2. 교육·의료·교통·조세·건축·상하수도·전기·통신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
 - 3.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
 - 가.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92조의 2에 따른 계약관련 정보
 - 나.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1조에 따른 수의계약 내역 정보
 - 다. 「국가재정법」 제9조에 따른 재정정보
 - 라. 「지방재정법」 제60조에 따른 재정운용상황에 관한 정보

- 마. 그 밖에 법령에서 공개, 공표 또는 공시하도록 정한 정보
- 4. 국회 및 지방의회의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과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 감사 결과에 관한 정보
- 5. 기관장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
- 6. 그 밖에 공공기관의 사무와 관련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정보
- ② 자발적 사전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종류, 공개의 주기·시기 및 방법 등은 변동이 있을 때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정부간 행물의 발간·판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표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자발적 사전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기안 담당자가 결재권자의 결재 후 지체 없이 홈페이지 사전 정보공개 자료실에 공개유형별로 원문 그대로 공개하여야 한다.
- ④ 각 소속의 정보공개담당관은 제1항 각 호의 정보공개 대상 중 공개되지 않는 정보를 점검하고 적극 공개하도록 노력한다.
- 제7조(자발적 사전공개 범위) ① 결재문서 중 공개로 분류된 문서는 자발적 사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공개로 분류된 결재문서의 경우에도 일상적인 업무로서 자발적 사전공개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청구에 의해서만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정보는 자발적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.
 - ② 결재문서 중 부분공개로 분류된 문서는 공개부분과 비공개부분 으로 분리할 수 있는 경우 비공개부분을 제외한 공개부분에 대해서

만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. 이 경우 제1항의 단서규정을 준용한다.

- 제7조의2(정보공개 처리 예외사항) ① 공사가 보유·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정보부존재 사유를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민원사무로 분류하여 처리한다.
 - ② 진정·질의·제안 등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민원사무로 분류하여 처리한다.
 - ③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결정통지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청구를 다시 요구한 경우에는 종결처리 할수 있다.
 - ④ 사전에 공표된 정보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정보가 있는 곳(공사 홈페이지 등)의 안내로 갈음할 수 있다.
- 제8조(비공개대상 정보) ① 모든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및 제9조에 따른 정보공 개심의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.
 - 1.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(국회규칙·대법원규칙·헌법재 판소규칙·중 앙 선거관리위원회규칙·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정한 다)에 따라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
 - 2. 국가안전보장·국방·통일·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
- 3.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올 우려 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- 4.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, 수사, 공소의 제기 및 유지, 형의 집행, 교정,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
- 5. 감사·감독·검사·시험·규제·입찰계약·기술개발·인사관리·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·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
- 6.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·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. 다만,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.
 - 가.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
 - 나.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 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
 - 다.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
 - 라.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·직위

- 마.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·직업
- 7. 법인·단체 또는 개인(이하 "법인 등"이라 한다)의 경영·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. 다만,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.
 - 가.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·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
 - 나. 위법·부당한 사업활동으로 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 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
- 8.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·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- ② 본사 정보공개담당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을 3년에 1회 이상 세우고 이를 공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바꿔야 한다.
- 제9조(정보공개심의회) ① 공사 정보공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(이하 "심의회"라 한다)를 둔다.

- 1. 공개청구 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처리부서 단독으로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
- 2.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
- 3.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
-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(외부위원 3명 포함)으로 구성하며, 심의회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공 개담당관으로 한다.
- 1. 위원장: 정보공개책임관
- 2. 내부위원 : 법무실장 그리고 위원장이 선정하는 각 본부·실·단의 수석처장 2명
- 3. 외부위원 :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학계·법조계 및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정보공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.
- ③ 삭제
- ④ 심의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한 경우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⑤ 심의회는 회의안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청구인 또는 관련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- ⑥ 심의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게는 「회의수당 지급 세칙」에 정한 기준에 따라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- ⑦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기록을 유지·관리한다.
- ⑧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.
- 1.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내용 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청구한 이의신청
- 2.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
- 3.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
- 4. 이미 심의회를 거친 사항에 대한 이의 신청
- 제9조의2(정보공개실무심의회) ① 정보공개심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신속한 정보공개결정을 위하여 정보공개실무심의회(이하 "실무심의 회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 - ② 실무심의회는 정보공개담당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법규담당자, 처리부서 업무담당자를 위원으로 하며, 주관부서 정보공개담당자를 간사로 한다.
 - ③ 각 소속기관은 정보공개담당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그 외 위원은 위원장이 자체실정에 맞게 정한다.
 - ④ 실무심의회는 제9조제1항제1호의 사항을 심의하며, 필요시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.
 - ⑤ 외부위원에게 지급하는 자문료는 제9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- 제9조의3(정보공개처리절차) ① 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는

주관부서에서 접수하여 처리부서로 분류한다.

- ② 정보공개담당관은 정보공개청구서의 내용이 2이상의 부서에 관련이 되거나 처리부서를 정할 수 없을 때에는 관련성의 정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부서를 지정한다.
- ③ 제2항에 의하여 2이상의 부서에 관련된 청구내용의 처리부서로 지정된 부서는 청구내용이 관련된 부서의 업무협조를 받아야 하며, 업무협조의 요청을 받은 관련부서는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- ④ 처리부서의 장은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시행규칙 별지 제 7호서식에 따라 청구인에게 통지하고 주관부서에 그 처리사항을 통 보하여야 한다.
- 제10조(비용부담)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하며, 수수료 금액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다.
 - ②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라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공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한 수수료에서 50퍼센트를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다. 다만, 전자파일의 변환 작업이 필요하지 않은 문서·도면·사진 등의 전자파일을 복제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.
 - 1. 파일 용량이 크지 않아 전송·복사 등이 쉽게 이루어지는 경우
 - 2. 여러 개의 파일로 나누어져 있지 않은 경우
 - 3. 부분공개 등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로 편집할 필요가 없어 그대로

공개가 가능한 경우

- 4. 그 밖에 추가적인 업무부담을 유발하는 사유가 없는 경우
- ③ 시행규칙 제7조 별표에서 정한 수수료는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해당될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한다.
- 1. 시행령 제1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: 50퍼센트
- 2. 시행령 제17조제3항제3호 : 100퍼센트
- ④ 청구인이 정보공개결정사항을 우편으로 송달받기 원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와 우표요금을 징수한다.
- 제11조(정보공개교육) 정보공개담당관(소속기관 포함)은 소속직원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보공개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 - 1. 정보공개 관련 법령 및 지침 등
 - 2. 자발적 공개대상정보의 범위, 공개주기·시기 및 방법
 - 3.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사항
 - 4. 그 밖에 정보공개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- 제12조(정보공개방의 구축 및 운영) ① IT운영센터장은 정보공개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사 홈페이지에 정보 공개방을 갖춰야 한다.
 - ② 각 본부·단·실장 및 각 소속기관장은 제1항의 정보공개방이 원활 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업무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.

- 제13조(정보공개 운영계획 및 실적평가 등) ① 각 본부·단·실장 및 각 소속기관장은 정보공개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계 획을 세워 시행하여야 한다.
 - ② 정보공개책임관은 각 소속의 정보공개 운영실적을 내부경영평가지표로 선정하여 활용 할 수 있다.

부칙 <제2020-33호, 2020.05.27.>

이 규정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